

문수테시앙 국민임대주택(3단지)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 공고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에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문의 : 울산도시공사 주택·도시재생팀(052-219-8453, 8454)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 08. 1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착순 순위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미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울산도시공사 주택·도시재생팀(052-219-8453, 845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주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문수데시앙 3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울리영해로 13-9	5개동 416세대	'15. 05.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공급 유형	주택 유형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국민 임대	46A	46.5930	24.9622	2.3502	26.0320	99.9374	복도식/개별	214	2	35
	46B	46.5930	24.9622	2.3502	26.0320	99.9374	복도식/개별	114	7	30
	51A	51.7240	27.4687	2.6090	28.8988	110.7005	복도식/개별	60	4	25

- 단지배치(조감도) 및 평면도 등은 **별지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보상 → 임대안내 → 문수데시앙 → 세대별 평면도, 조감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비확장형이며, 임대기간 동안 확장이 불가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샷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주택 유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46A	24,900,000	5,000,000	19,900,000	300,000	36,600,000	61,500,000	117,000
46B	24,900,000	5,000,000	19,900,000	300,000	36,600,000	61,500,000	117,000
51A	28,100,000	5,600,000	22,500,000	330,000	45,700,000	73,800,000	101,00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8. 08. 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신청자	자격검증 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	비 고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 신청세대원 ·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 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 분	자격검증 대상	비 고
외국인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됨.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음.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①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②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태 아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분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신청자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군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 50㎡미만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용면적 46㎡(46A, 46B) 주택 유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장애등급 제3급 중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 고 사 항
	3인이하	3,501,810원이하	①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②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③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 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소득에 1인당 284,060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시 : 7인가구=6인가구+284,060 / 8인가구=7인가구+284,060)
	4인~5인	4,092,830원이하	
	6인	4,376,890원이하	
	7인	4,660,950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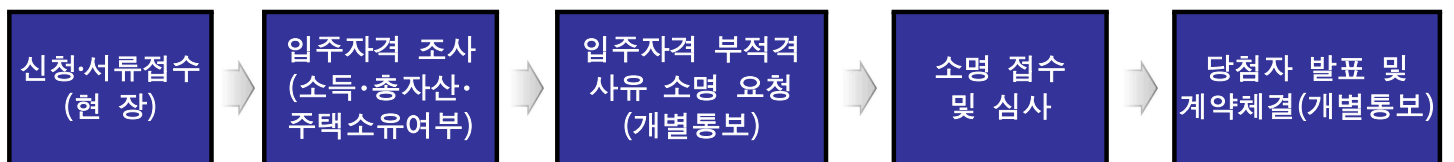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 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총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 접수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선착순)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서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접수	장소(신청접수 및 계약)	계약안내
문수데시앙 3단지(국민입대) (46A, 46B, 51A)	2018. 08. 24.(금) ~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접수시간 : 10:00~16:00)	울산도시공사 2층 주택·도시재생팀 (052-219-8453, 8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계약체결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자격 조회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당해연도 종료일(2018. 12. 31.)까지 모집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예정

※ 신청시 주의사항

- * 예비입주자 선착순 참석명부 미서명시 선착순 순번 부여 불가
- * 선착순 순번과 접수 순번은 다를 수 있음.(참석명부 서명자가 본인 호명시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됨.)
- * 접수시간 외 시간,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 가능
- * 1개의 주택유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 신청 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구 분	세 부 내 용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울산도시공사 2층 주택·도시재생팀)
교통편	205, 225, 405, 415, 453, 504, 507, 527, 537, 705, 715, 744번 버스 승차 → 울산대공원동문 앞 하차
약 도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주요 내용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참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붙임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모집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붙임3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1통
서약서 (붙임4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자료(붙임4) 작성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주요 내용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p style="color: blue; margin: 0;"><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p style="color: blue; margin: 0;"><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및 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51A 주택 신청시 신청자 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거나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신청자)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td> <td colspan="2">140%</td> </tr> </tbody> </table> <p>※ 퇴거사유이나 1회 한하여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할증비율</p>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14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자격 참조) •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선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p>당첨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울산도시공사 주택·도시재생팀(052-219-8453, 8454)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p>입주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반환해 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세대의 사전점검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2018. 08. 10.



울산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호]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05. 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별지 제2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설명 및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자산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별지 제3호] 조감도 및 세대별 평면도

■ 조 감 도



■ 평 면 도



※ 상기 조감도와 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